

국제기업 연금회계기준의 연금계리적 평가

성 주 호*

우리는 근로기준법 개정(1997. 12. 31)을 통하여 미약하나마 기업연금의 출발점인 퇴직보험을 도입하였다. 최근 IASB가 국제적 정합성을 강조하는 국제기업연금회계기준 IAS 19호를 발표하면서 3층노후보장체계에 부합하는 한국형 기업연금회계기준 제정을 위한 일련의 노력이 한국회계연구원을 중심으로 국내 회계전문가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지만, 연금계리 전문가들은 이렇다할 체계적 검토의견조차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IAS 19호 규정 내용 중에서 연금계리적 분석대상이 되는 핵심 이슈 3가지(즉, 계산기초규정, 적립방법규정 및 연기금 부채·자산 평가규정)를 도출하고 계리적 접근법(actuarial approach)을 사용하여 각 규정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IASB가 국가별 사회·경제 환경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제시하고 있는 선택적 규정을 어떠한 방향으로 한국형 기준에 접목할 것인가 그리고 국제회계기준과 조화를 이루면서 노·사·정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율할 것인가 등에 대한 객관적 해결책을 제시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연금회계가 회계학의 한 특수 분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일반회계와는 달리 미래의 불확실성을 예측하고 추정하는 연금계리학의 학문적 영역과 상당부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아울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실제적 기업연금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계리인과 회계사간의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끝으로, 본 논문이 연금계리학과 연금회계학의 학문적·실무적 공조의 실제적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Key Word : 연금계리적 평가, 연금 재정, 지급불능 위험

I. 서론

국가별 경제·사회적 특성에 따라 관행적으로, 지형적으로 정착되어온 기업연금 관련 회계기준이 급속히 국제화·표준화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 표준화 필요성의 시

* 홍익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조교수(e-mail:jhsung@wow.hongik.ac.kr)

발점은 역사적으로 퇴직금 지급형태가 사업주의 온정주의에 근거한 공로보상프로그램(reward program)인 퇴직일시금 지급형태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정착되기 시작한 임금후불프로그램(deferred remuneration program)인 퇴직연금 지급형태가 보편화 된 20세기 중반이라고 할 수 있다¹⁾. 즉, 퇴직연금의 성격이 임금후불이라는 노·사간의 인식은 결국 근로자는 발생연금급부(accrued pension benefits)에 대해서 수급권(vested rights)을 가지는 채권자(creditor)로서, 사업주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debtor)로서의 위치를 점한다는 것이며, 이는 연금부채(pension liabilities)가 기업의 대차대조표상에 공시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욱이, 1993년 유럽연합(EU) 출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등 세계시장체계의 탈국경화(脫國境化), 통합화(統合化) 등 신경제체제로의 급속한 진전은 재무회계정보의 국가간, 기업간 비교가능성 제고의 필요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국제화 과정 속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or IASB)가 1995년에 (1974년 설립된) 국제증권관리위원회(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or IOSCO)의 요청에 따라 1998년에 기존의 국제회계기준을 재정비 및 제정을 통하여 총 30개에 달하는 핵심국제회계기준(core IAS)을 마련하였다²⁾.

특히 국제기업연금회계기준인 IAS 19호는 1983년 『사업주 재무제표상의 퇴직금부 회계(Accounting for Retirement Benefit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Employers)』로 최초 공포된 후, 1993년 『퇴직금부원가(Retirement Benefit Cost)』로 개정, 1998년 『근로자급부(Employee Benefits)』³⁾로 재개정, 2000년 부분 내용

- 1) 퇴직연금이 임금후불이라는 인식의 보편성은 간접적으로 관계당국(국세청)의 관련 법규 신규 제정으로 알 수 있다(예: Finance Act 1952(영국), Internal Revenue Code 1954(미국)).
- 2) IASB는 1973년에 설립된 기존의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IASB)을 2001년 4월 조직 개편 및 명칭 변경으로 새롭게 탄생한 국제회계기준의 최종결기구이며, 30개의 국제회계기준 명세표는 김해식(2001), pp.6~7 참조.
- 3) 근로자급부란 노동의 제공에 따른 교환급부로서 5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① 단기 근로자급부(예: 급여, 상여금, 사회보험료, 현물급부 등 노동제공 이후 지급기간이 1년미만인 급부) ② 퇴직후급부(예: 퇴직연금, 퇴직일시금, 퇴직의료급부, 퇴직생명보험급부 등) ③ 기타 장기 근로자급부(예: 장기근속급부, 장기장애급부 등 노동제공 이후 지급기간이 1년이상인 급부) ④ 해고위로급부 ⑤ 지분보상급부(예: 주식매입선택권, 우ரி사주매입권 등).

개정 과정을 거쳐 최근 제25차 IOSCO 총회(2000. 5. 14 - 19, 시드니 개최)에서 기타 핵심 국제회계기준과 함께 공식적으로 수용됨으로써 2001년 1월 시행 일정에 힘을 실어 주었다.

최근 국제적 표준화에 편승하여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 각국에서도 학계, 공인회계사회 및 보험계리인회 등의 협력 하에 자국 기업연금회계기준을 IAS 19호와 조화시키는 일련의 노력이 있어왔다. 한편 우리는 1999년 보험사의 '퇴직보험' 상품이 시판되면서 이를 활용한 사외(社外)적립분을 '퇴직보험에치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초보적 내용에 머물고 있지만, 최근 한국회계연구원이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한국형 기업연금회계기준을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보고서로서 『연금회계(2001)』를 출간하였다⁴⁾. 아울러, 기업연금제도의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법정최소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완전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재정경제부의 발표(2002. 3. 1)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연금제도 도입, 운용상의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 및 연구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현안 과제임에 틀림없다.

특히 연금회계, 연금계리, 연기금운용 및 연금세제 등은 연금제도 운영상에서 독립적으로 검토되고 시행되는 독자적 분야가 아니라,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는 유기체적 연금 관련 분야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상호 조화롭게 검토되고 종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실무적 차원에서 연금회계와 연금계리 분야는 회계감사인(auditor)과 보험계리인(actuary)이라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 적용·시행되는 분야이므로 상호 연계성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⁵⁾. 이와 같이 상호 보완

- 4)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의 특성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특징지워지며(성주호(2000), pp.64~67 참조), 회계적 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서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연금제도로 이행한 SFAS 87호(미국), SSAP 24호(영국), IAS 19호처럼 연기금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고 연금비용을 산출하는 기업연금회계기준이 없고, 단순히 기말에 명목가액으로 확정·평가된 퇴직급여추계액에 의한 퇴직금부채무를 산정하고, 기중에 증가된 당기 퇴직금부 발생액을 '(차)퇴직급여 ×× (대)퇴직급여충당금 ××'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현재 기업연금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한국회계연구원(KAI)에서 IAS 19에 부합하는 회계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한국조세연구원(KIPF)에서는 세제혜택을 위한 적격요건을 연구·검토 중에 있다.
- 5) 상호 관련성은 IAS 19호 제57절에서 명시하고 있다. 즉, 기업이 퇴직후급부채무를 산출할 때 보험계리인을 참여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일 전에 퇴직금부채무의 구체적 평가를 보험계리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을 기업에 부여하고 있다.

적 연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IAS 19호가 단순히 회계기준의 일종으로 취급되어 주로 회계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주로 검토되어 왔다⁶⁾. 따라서 본 논문은 IAS 19호에서 명시된 퇴직연금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의 의미를 연금계리학적 측면에서 해석하고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로써 기업연금제도 운용에 있어서 회계학적 접근법(accounting approach)과 계리학적 접근법(actuarial approach)의 상호 보완성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두 학문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II. 연금계리적 이슈 및 접근방법

기업연금회계의 주요 관심사는 확정급부형(defined benefit plans or DB)에 한정된다. 왜냐하면, 확정각출형(defined contribution plans or DC) 연금회계에서 기업은 회계연도말 현재 당기 근로에 대한 교환가치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각출금(payable contribution)의 초과지급분을 당기 선급비용(prepaid expense)이라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부족분을 당기 미지급비용(accrued expense)이라는 부채로 인식하며, 당기의 약정 각출금은 당기 비용(expense)으로 인식하는 등 그 회계처리의 간편성에 기인한다⁷⁾. 따라서 우리는 DB형 연금회계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아울러 논의의 일반성을 유지하기 위해 IAS 19호에 사용된 회계학 전문용어를 가급적 인용하면서 연금계리적 분석을 수행하기로 한다.

1. 연구개요

6) 회계학적 접근법에 의한 주요 연구 결과로 류건식(1999), 전춘옥·이효익·이석영(1998, 2001) 등을 언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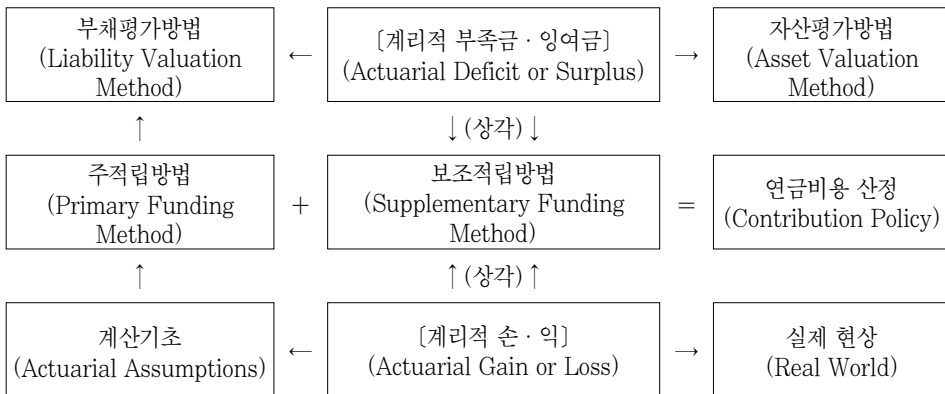
7) DC형에서 약정한 각출금을 당기 원가(cost)가 아닌 비용(expense)으로 회계처리하는 근거는 DC형 연금의 운용 수익 및 손실은 모두 근로자의 몫이므로 기업 측면에서 보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소멸원가(expired cost)이기 때문이다(즉, 자산화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 이는 후술할 DB형에서 원가로 회계처리함과 대조를 이룬다.

IAS 19호에 명시된 DB형 연금회계기준을 살펴보면, 연금계리적 주요관심영역은 아래의 3가지 이슈로 집약될 수 있다.

- 이슈1: 퇴직연금 계산기초 규정
(regulation for the actuarial assumptions)
- 이슈2: 퇴직연금 (주, 보조)적립방법 규정
(regulation for the (primary, supplementary) funding method)
- 이슈3: 퇴직연금 부채 · 자산 평가 규정
(regulation for the asset & liability valuation)

이들 각각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이들의 상호관계를 전체적 흐름에서 먼저 파악함이 이해의 편의성을 제고하리라 기대된다. 아래의 <표 1>처럼 간략히 도식화 할 수 있다.

<표 1> DB형 계리평가절차 요약도



위와 같은 계리평가절차(actuarial valuation process)는 회계결산절차(account closing process)를 위한 과학적 · 합리적 과정이며, 이를 통하여 기업은 최종적으로 대차대조표상의 순연금부채(net pension liability)와 손익계산서상의 연금비용(pension

expense)을 산출하게 된다. 더욱이 IAS 19호 제56, 57절에서는 자산 및 부채 평가의 정기성(valuation regularity)을 강조하고 있으며 평가일(valuation date)과 상관없이 산출기준일을 대차대조표일(balance sheet date)로 설정하고 있어 평가액은 중요성 관점에서 대차대조표일 가액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와는 달리, 정기적 측정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단지 자산 혹은 부채상의 중요한 정정(訂定)이 필요할 때마다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⁸⁾.

결국 기업연금 가입자 연령별 인구구조의 안정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유지된다면(즉, 과거 일정시점에서 평가한 자산 평가액 및 부채 평가액의 중대한 변동이 없다면), 과거 평가액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산기초의 가정치들을 적용하여 당기 대차대조표일까지의 예측변동액만을 가감함으로써 회계연도말 연기금 자산 및 부채를 보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평가에 따르는 시간적 지연 및 비용을 감안한 효율적 규정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회계정보의 중요성 제약조건(materiality constraint)에 상응하는 실무적 규정으로 취급될 수 있다.

또한 위의 평가과정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계리적·회계학적 정보는 이용자간의 이해관계(利害關係)에 따라 그 중요도를 달리 한다. 따라서 <표 1>의 각 요소를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선택하는가에 앞서 이들 이해집단별 정보 선호도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8) 연금계리적 연구 결과는 정기적 평가 절차(regular valuation process)는 피드백 관리 메커니즘(feedback control mechanism)이므로, 가능하면 자주 그리고 정기적으로 평가함을 강조하고 있다(Haberman(1993), Haberman & Smith(1997) 참조).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 1년기준(one year rule)으로 행한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는 “The Occupational Pension Schemes(Disclosure of Information) Regulations 1986”의 ‘규정 8’에서 최소 3.5년마다 1회 실시함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산은 매년 시가에 의해 회계학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연금부채는 최대 3.5년마다 한번씩 평가될 계리적 영역으로 특정화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평가주기의 장기 가능성은 영국계리인회(Institute of Actuaries, 1848년 설립)의 오랜 역사성에서 알 수 있듯이 근본적으로 계리인에 의한 연금부채 평가는 오랜 역사적 검증을 통한 사회적 신뢰성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연금부채의 평가는 현시점 평가액뿐만 아니라 향후 부채의 변화 과정에 대한 예측까지 포함하고 있어 매년 평가의 필요성을 상당부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계리적 역사성 및 전문성이 미약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평가주기를 1년기준(회계기간)으로 설정한다면 IASB의 정규성 규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2. 회계정보이용자간의 이해갈등

기업연금회계기준을 제정한다는 것은 IASB개념서에 제시된 것처럼 계속기업기준(going-concern basis) 및 발생주의기준(accrual basis)이라는 2가지 기본회계공준(basis postulates of accounting)을 전제로 하여, 기업의 연금관련 회계정보가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작성의 기준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회계기준에 의해 산출된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4가지 질적 속성(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accounting information)으로 ㉠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가능성(understandability)이 전제되어야 하고, ㉡ 이용자가 믿을 수 있는 신뢰성(reliability)이 있어야 하고, ㉢ 이용자가 기간별 혹은 기업간 차이를 검토할 수 있는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 이용자가 원하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적합성(relevance)이 있어야 한다. 다양한 계층의 광범위한 정보이용자가 존재하지만 ㉠~㉣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미미한 반면, 목적적합한 정보(relevant information)에 대한 이용자별 주된 관심사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실제에 있어 기업연금 회계정보로부터 알고자 하는 유용한 핵심정보는 바로 정보이용자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인가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즉, 기업연금과 관련한 회계정보는 다양한 이해 주체가 존재하며 이들이 선호하는 주요정보는 상호 차별성이 있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 편파적 정보는 결국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며 더 나아가 정보 이용자간의 이해갈등으로 이어져 편법관리리스크(maladministration risk)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회계정보의 완전불편성(完全不偏性, complete freedom of bias)은 현실적으로 실현하기가 어려우므로, 정보 이용자간의 이해 갈등적 요소를 조율하면서 기업연금제도의 설립,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회계정보 산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상당부분 충족하는 회계기준이라면 회계정보의 불편성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표 2〉 회계정보 이용자별 주된 관심 정보⁹⁾

주요 회계정보 이용자	목적 적합한 핵심 회계정보	비 고
가입(현직, 퇴직)자 (plan members)	연기금 지급능력 여부 (Pension Fund Solvency ?)	기업이 파산 여부에 관계없이 연금 수급권 (vested pension rights)이 항시적으로 보장 될지 여부
기업(사업주) (plan sponsor)	각출금 안정성 여부 (Contribution Stability ?)	기업의 계속성차원에서 각출금은 예측 가능한 일정범위 이내에서 장기적·지속적으로 안정화 될지 여부
국세청 (revenue authorities)	연기금 잉여금 규모 (Pension Fund Surplus ?)	연기금의 비과세 혜택(이자수익 및 자산매각 수익)으로 연기금이 기업의 세전 당기순이익 은닉처(tax haven)로 악용됨을 방지하는 차원
감독기관 (supervisory authorities)	연기금 지급능력 여부 (Pension Fund Solvency ?)	가입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및 연기금의 재무적·도덕적 운영 건전성 제고 차원
주주 (company shareholders)	연기금 가치 정도 (Pension Fund Value ?)	연기금가치는 기업가치(EV)와 더불어 M&A, 청산, 구조조정 등의 경우 주주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가짐

즉, 첫째, 가입자, 감독기관 및 주주 이해집단의 공통관심사는 결국, 기업의 파산, 청산 등의 위험에 항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단기적 지급능력 조건(requirement for short-term fund solvency)으로 집약될 수 있다.

둘째, 기업 더 나아가 국세청의 공통관심사는 연기금의 장기적 적립안정성 조건(requirement for long-term funding stability)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러한 기본개념에 근거하여 위에서 언급한 이슈1, 2, 3 각각에 대해 순차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9) Haberman & Sung(1994), Dyson & Exley(1995) 등의 연금계리적 연구 결과를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정리·요약한 표이다.

Ⅲ. 연금계리적 차원의 국제기업연금 회계기준 평가

1. 계산기초규정 평가

미리 결정된 급부산출공식(predetermined benefit formula)에 따라 향후 발생할 연금채무(defined benefit obligations)의 계리현가(actuarial present value)¹⁰⁾ 그리고 당기 근로에 의해 발생할 당기 채무 발생분의 사전 적립액인 당기근무원가(current service cost)¹¹⁾ 등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제반 재무·인구통계 확률변수들의 장래 예측치들의 집합을 계산기초(actuarial assumptions)라고 한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계산기초의 적정성 여부는 계리평가절차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계산기초의 설정은 계리인의 전문영역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IAS 19호에서는 계리인에 의한 추정을 의무하고 있지는 않다(제57절 참조). 그러나, 재무 확률변수(예 : 할인율, 임금상승률, 자산운용기대수익률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추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인구통계 확률변수(예 : 사망률, 조기탈퇴율, 이직율 등)에 대한 구체적 추정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인구통계적 추정 부분은 계리인의 전문영역으로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제73절 참조). 그러면 이와 같은 규정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결국, IASB의 관점에서 본다면, 재무변수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신뢰성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해온 회계전문가 집단의 오랜 전문적 지식을 인정함으로써 회계기준상에서 관리 가능한 변수(controllable variables)로 취급하는 반면, 인구통계변수는 보험사의 고유한 지적 소유권에 해당하는 생명표 작성 업무처럼, 추정상의 기술성, 복잡성, 과학성 등으로

10) 연금계리학에서는 이를 이상적으로 미리 적립되어야 목표적립수준으로 취급하여 표준부채(standard fund or actuarial liability)라고 하며, 회계학적 부채(accounting or legal liability)와는 다르다.

11) 연금계리학에서는 계산기초상의 모든 예측치가 정확하게 100% 실현되었을 때 산출되는 이상적 각출금으로 취급하여 이를 표준각출금(standard contribution or normal cost)이라고 한다.

인하여 회계기준상에서 구체적으로 명기하기가 곤란한 관리 불가능한 변수(uncontrollable variables)로 다루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계산기초 설정 문제는 두 전문가 집단의 업무 공조 필요성의 출발점이며, 더 나아가 계리학과 회계학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가교(架橋)역할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IAS 19호의 계산기초 설정과 관련하여 연금계리적 관점에서 흥미로운 점은 다음 두 가지로 함축될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해 평가하도록 한다.

첫째, 계산기초는 불편성(unbiasedness) 및 양립성(compatibility)을 충족하는 기업별 최선추정치(best estimates)로 설정한다(제72~75절 참조). 여기에서 불편성은 지나치게 비관적·보수적이거나 낙관적이 아님을 의미하고, 양립성은 추정된 예측치는 기타 변수를 추정할 경우 필요하다면 그 추정한 값을 그대로 적용하는 일관성을 의미한다(제75절 참조). 따라서 불편성과 양립성은 추정의 기본원칙으로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별 최선추정치는 회계의 계속기업기준 관점에서는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II-2에서 언급한)단기적 급부안전성 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조치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실제로 연금계리학에서는 최선추정치(best estimates), 신중추정치(prudent estimates), 우려추정치(cautious estimates)¹²⁾ 등 3종류의 추정치를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려추정치는 불편성 관점에서 적합하지 못하다. 따라서 최선추정치와 신중추정치가 고려대상이지만, 연금재원의 안전성 제고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안전할증을 내포하고 있는 신중추정치(best estimates with prudent margins)를 권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Thornton & Wilson(1992)에 의하면(단, 아래의 $\Pr\{. | .\}$ 은 조건부 확률을 나타냄),

- ① $\Pr\{\text{향후 안전성 확보에 유리} \mid \text{최선추정치}\} \approx 50\%$,
- $\Pr\{\text{향후 안전성 확보에 불리} \mid \text{최선추정치}\} \approx 50\%$;

12) 통계학적으로 최선추정치는 최우불편추정치(most-likely unbiased estimate)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투자수익률의 최선추정치가 $i\%$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신중추정치는 $(i - 0.5)\%$, 우려추정치는 $(i - 1.0)\%$ 등으로 설정된다. 여기에서 '신중'은 '최선'에 대한 보수적 안전할인을, '우려'는 '신중'에 대한 보수적 안전할인을 의미한다.

- ⑥ $\Pr(\text{향후 안전성 확보에 유리} \mid \text{신중추정치}) \approx 60\%$,
 $\Pr(\text{향후 안전성 확보에 불리} \mid \text{최선추정치}) \approx 40\%$;
 ⑦ $\Pr(\text{향후 안전성 확보에 유리} \mid \text{우려추정치}) \approx 70\%$,
 $\Pr(\text{향후 안전성 확보에 불리} \mid \text{우려추정치}) \approx 30\%$.

또한 그들은 최선추정치를 이용한 연금부채는 단기적 급부안전성 관점에서 약 20%수준에 미달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선추정치에 의한 계산기초 설정은 기업연금회계기준이 기업연금제도의 연속성을 전제로 제정됨에 부합하지만, 다수의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관심사를 이해 조율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표 2〉 참조).

둘째, 재무변수 추정 규정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기업의 연금채무가 존재하는 전(全)기간 동안 기대되는 시장수익률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제77절 참조). 특히, 할인율(discount rate)의 최선추정치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연금급부 지급시점 및 지급액의 예상 현금흐름과 대칭(matching)될 수 있는 우량사채(사채시장이 미비한 경우 국채)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실무적 차원에서 이들의 가중평균할인율(weighted average discount rate)을 적용할 수 있다(제78~81절 참조). 단, 결정될 할인율은 투자위험, 신용위험 등을 배제한 순수 돈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만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할인율 설정 기준을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조항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회계학적 측면과 연금계리적 측면간의 설정 방법상의 이견의 소지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할인율은 연금부채의 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가장 민감한 재무변수이며, 이를 연금계리학에서는 준비금부리이율(valuation discount rate)이라 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추정되는 것이 계리적 관점이다¹³⁾. 다음은 연금계리학에서 주로 언급되는 준비금부리이율 결정방법이다. 즉,

13) Thornton & Wilson(1992)의 실증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준비금부리이율을 1% 상향 조정하면 연금부채가 약 14% 하향 조정되어 궁극적으로 연금비용은 약 24% 감소됨을 보여주고 있다.

- ① 확정금리형(single discount rate): 연금부채가 할인현금흐름법에 의해 산정되므로, 연기금 자산 포트폴리오의 장기평균기대수익률을 기초로 적정 할인율을 확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으로 발행년도방식(lock-in method)에 가깝다. 이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형으로, 자산과 부채간의 비대칭위험을 평가단계에서부터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하려는 계리적 의미가 있다.
- ② 금리연동형(term-dependent market discount rates): 연기금 자산이 주로 시가로 평가되므로, 연금부채도 시장기대수익율을 반영한 할인율로 평가함이 자산과 부채 평가방법상의 일관성(consistency)이 제고된다는 주장으로, 평가년도방식(lock-out method)에 가깝다. 이를 Lee(1986)는 단기정정(短期訂定, short-term patch)이라 표현하고 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형으로 특정 지워진다.
- ③ 복합금리형(multiple liability discount rates): 연금수급자와 연금대기권자 각각의 연금부채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예를 들어 초기 가입자의 연금부채에 상응하는 자산은 공격적 주식투자가 가능한 반면, 연금수급자의 연금부채에 상응하는 자산은 현금유동성 문제가 내재하므로 주로 만기와 수익이 안정된 회사채/국공채 투자 재원으로 합당하므로, 연금부채의 성격에 따라 2개 이상의 차별적 확정금리형을 적용하자는 Bader(1983)의 이론에 근거한다.

따라서, IASB의 준비금부리이율 결정방법은 금리연동형에 근거한 시가접근법(market value approach)이다. 물론 회계정보가 대차대조표일 현재, 계속기업기준에 의해 창출되므로 현시점의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시가접근법이 타당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금리연동형은 자산과 부채 평가상의 일관성 및 자산과 부채간의 현금흐름 비대칭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 그 우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IASB의 '우량사채수익률(혹은 국채수익률) 참조 및 돈의 시간적 가치만을 반영' 한다는 규정은 일종의 무위험수익률(risk-free rate)에 근거한 산정기준이므로, 실제 연기금 자산의 다양한 투자 운용 형태(주식, 채권, 부동산, 대출, 현금 등) 및 그에 따른 투자위험 등을 고려한다면 체계적 비대칭위험(systematic mismatching risk)이 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연기금 자산운용수익률은 채권수익률보다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연금부채가 과대계상 되어 기업의 연금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¹⁴⁾. 이는 역설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불편성 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즉, 지나치게 보수적 임). 더욱이 최근 경제환경을 고려한다면 우량사채(혹은 국채)시장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는 근거는 찾기 힘들고, 이로 인하여 (제1절에서 설명한) 부채상의 중요한 정정이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평가의 정기성을 확보하기가 힘들다. 아울러 잦은 평가의 필요성에 따른 기업의 연금관리비용의 증가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소지가 높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단점들은 기업들로 하여금 연금 운영의 재무적 부담을 필요 이상으로 가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금리연동형보다는 확정금리형에 근거한 연기금 자산의 장기평균기대수익률을 준비금부리이율로 설정함이 연금계리적 관점에서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기업 및 연금제도의 연속성을 전제로 하는 회계기본원칙에도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적립방법규정 평가

IASB에서 규정한 주적립방법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주적립방법의 사후적 수정·보완 방법인 보조적립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 주적립방법 평가

기업이 직면한 내·외적 환경 변화(노·사·정 관계 변화를 포함하여)에 따라 기존의 주적립방법을 개량·변경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적립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연금계리학의 주요과제 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검증된 기업연금관련 주적

14) (다음절에서 설명할) 적립방법 적용 관점에서 살펴보면, 주적립방법에 의해 상당부분 조울 가능한 비대칭위험(혹은 계리적 손·익)을 보조적립방법에서 관리하게끔 기능전이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적립방법 적용상의 불필요한 비효율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립방식은 10여종에 이르고 있지만, 연구결과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히 많은 방법들이 발표되었고 지금도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¹⁵⁾. 이러한 다양한 방법 중에서 IAS 19호 제50절에서 예측단위적립방법(projected unit credit method or PUM)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물론 이러한 통일적 적용은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계경제체계의 탈국경화 추세에서 요구되는 기간별, 기업간·국제간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국제회계기준 제정의 기본취지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왜 PUM을 선정하였는가? 이러한 IASB의 선택을 연금계리적 관점에서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자.

PUM에 의해 제공되는 회계정보는 당기근무원가(current service cost or CSC)와 예측급부채무(projected benefit obligation or PBO)의 계리현가이다. 따라서 <표 2>에서 설명한 것처럼 '단기적 지급능력 조건'과 '장기적 적립안정성 조건' 둘 모두를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가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단기적 지급능력 제공 여부에 대한 평가는 무엇인가? PUM의 적립특성은 주어진 계산기초에서 가입(현직, 퇴직)자 개개인별로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PBO의 계리현가를 먼저 산정한 후, 수지상등의 원칙(actuarial equivalence principle)을 적용하여 당해 근무에 의해 발생할 추가적 단위 적립 채무액(additional one-unit credit)을 CSC로 산정한다¹⁶⁾. 즉, 적립기간(funding period)을 근로자의 잔여근속기간이 아니라 당해연도로 설정하고 당해연도 급부발생분을 사전완전적립(pre-fully-funding)하는 적립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PUM은 기업의 파산·청산 등으로 인해 연금제도의 비연속성(winding-up), 즉 적립 중단 가능성에 대

15)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정태적 적립방법론(static funding methodology)에서 동태적 적립방법론(dynamic funding methodology)으로 연구의 초점이 바뀌고 있는 추세임(이러한 경향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Cairns(2000) 참조).

16) 가입자 개인별로 PBO 계리현가 및 CSC를 계산하여, 전체적으로 합산함으로써 PUM은 개별적립방식(individual funding methods)에 속하며,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과거 근무분(past-service benefits)을 연금채무로 산정함으로써 PUM은 발생급부 평가방식(accrued benefits valuation methods)에 속한다(성주호·김진역(1998) 참조).

비하여 연금수급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적립방법이므로 단기적 지급능력 요건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장기적 적립안정성 제공 여부에 대한 평가는 무엇인가? 기업의 계속성을 전제로 적립기간을 설정한다면 가입근로자의 가입시점~퇴직시점까지 약 30여년에 걸쳐 기업의 적립부담을 균등하게 안정적으로 분산하는 적립방법을 설계할 수 있다¹⁷⁾. 그러나 발생한 연금수급권은 가입근로자의 확정권리이며 이연된 임금후불이라는 노·사·정의 공통된 인식, 그리고 기업의 경제환경 및 산업별 경쟁력 사이클의 급변 등 기업 재무위험 발생의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Marshall & Reeve(1993)가 언급한 것처럼 기업이 장기적 적립안정성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만한 근거가 약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PUM은 적립안정성 요건에 적합하지 못한 점이 있지만, 최근의 적립방법 변화 경향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단적인 예로, 기업 경영환경이 안정적이라면 기업의 관점에서는 <표 2>에서 설명한 것처럼 장기적 적립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근로연령별 구조(working-age structure)는 대체적으로 변화가 거의 없는 집단(approximately stationary population)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개인별 CSC는 근로연수 증가에 따라 증가하지만, 전체 근로자 CSC 총합은 전체 지불급료 총액의 일정 퍼센트로 항상 일정할 것이다. 따라서 PUM에 의한 적립안정성은 현실적·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적립의 단기적 및 장기적 요건 모두를 100% 만족하는 적립방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PUM은 연금계리학적 관점에서 장기적 적립안정성 요건에 다소의 문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단기적 지급능력 요건이 더욱 강화되는 시대적 추세에 보다 더 목적 적합한 회계정보를 제공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발생급부 평가방식을 취하고 있어 발생주의 회계원칙에도 부합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IASB의 PUM 선택은 연금회계 뿐만 아니라 연금계리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17) 실제로 이러한 적립원칙에 의해 개발된 것이 가입연령방식(Entry Age Method)이다 (성주호·김진역(1998) 참조).

나. 보조적립방법 평가

주적립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CSC는 주어진 계산기초가 현실적으로 100% 실현되고, 기업연금운영지침서(trust deed & rules)상의 내용 변화가 미래에도 없을 것을 가정하여 산출되는 이상적 미래 근무 각출금(ideal future-service contributions)이다. 그러나 연금제도는 기업 경영환경 변화, 산업환경 변화, 사회경제 변화 등을 닳아 가는 유기체적 제도이다. 따라서 <표 1>에서처럼 정기적으로 현시점의 재무상태를 점검하고, 예상된 결과가 아니라면 이는 과거로부터 발생해온 가정의 세계와 현실 세계의 괴리에 의한 계리적 손·익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과거 예측오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개발된 사후 정산적 조정장치(retrospective adjusting mechanism)가 바로 보조적립방법이다. 여기에서 제공되는 회계정보를 보조각출금(additional contribution or AC)이라고 하며, 최종적으로 권고되는 납입각출금(recommended contribution or RC)과의 관계는 「 $RC = CSC + AC$ 」이다. 당기 계리적 손·익의 발생 원인을 연금계리학에서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요인에 의해 AC가 필요하며, 연기금의 안전성 및 각출금의 안정성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즉,

- ㉠ 연금제도의 시행(plan inception)
- ㉡ 급부지급내용 혹은 급부공식의 변경(amendments to benefit policy)
- ㉢ 계산기초 혹은 주적립방법의 변경(amendments to actuarial valuation assumptions and funding method)
- ㉣ 계산기초 가정치와 경험치간의 괴리(differences between actuarial assumptions and actual experiences)

연금계리학에서 ㉠~㉢는 연금제도 시행시점 혹은 운영 중에 기존 가입현직자에 대하여 遡及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부채(supplemental liability)이므로, 이를 초기미적립부채(initial unfunded liability)라고 하고, ㉣의 경우만을 계리적 손·익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IAS 19호 제92~101절을 분석하여 보면, PUM을 적용하여 ㉠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연금부채의 純증감분을 당기 과거

근무원가(past service cost)로, ㉔와 ㉕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연금 자산·부채의 純증감분을 당기 계리적 손·익(actuarial gains and losses)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분류에 대한 연금계리적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Bleakney(1972)는 ㉔의 경우를 계리적 재평가 손·익(actuarial revaluation gains and losses)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금계리적 이슈는 어떠한 상각절차(amortization schedule)를 IASB가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면, AC의 수준을 결정하는 IASB의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이해의 편의상, 'AC=AC1(계리적 손익 당기 상각분)+AC2(계리적 과거근무원가 당기 상각분)'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첫째, IAS 19호 제92, 93절에서 계리적 손익의 상각절차에 대해 10%범위접근법(10% corridor approach)을 취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직전회계연도말(t)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되어야 할 계리적 손익 상각분($AC1(t+1)$)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¹⁸⁾. 즉,

여기에서,

$$\frac{[CUL(t) \text{ or } CUG(t)] - 10\% \times \text{Max}[AL(t), FV(t)]}{n(t)}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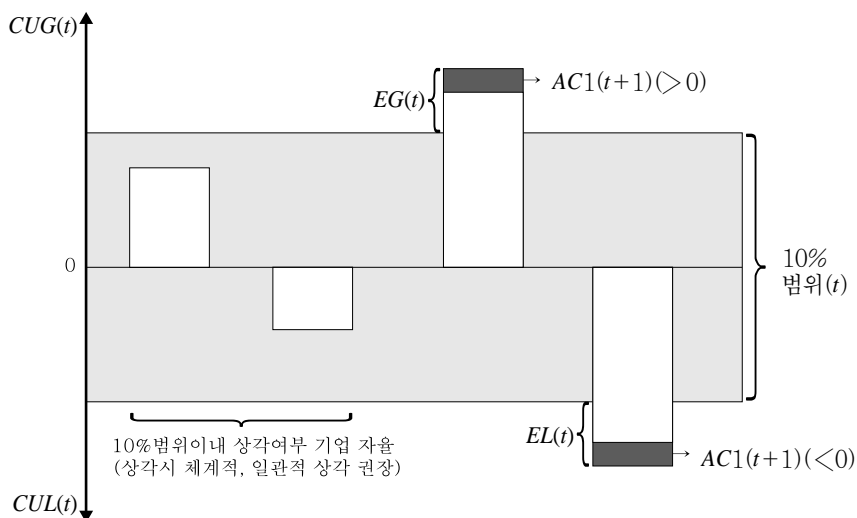
$CUL(t)$ = t 시점에서 미(未)인식·상각 순누적계리적손실, $CUG(t)$ = t 시점에서 미인식·상각 순누적계리적이익, $AL(t)$ = t 시점에서 PBO의 계리현가(표준부채), $FV(t)$ = t 시점에서 연기금 자산의 공정가액(시가), $n(t)$ = t 시점에서 가입현직자의 평균잔여근무기간.

위 식에서 분자 $CUL(t) - 10\% \times \text{Max}[AL(t), FV(t)]$ ($\equiv EL(t)$)는 10%범위초과손

18) AC는 최소상각액을 의미하고, 상각시 계리적 이익과 손실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기업 필요시 자율적으로 설정한 체계적, 일관적 조기상각법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조기상각법으로 즉시상각법(immediate cash injection or withdrawal), 정액상각법(straight-line method of amortization), 연금상각법(annuity method of amortization)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실을 의미하며(결과적으로 $AC1(t+1) > 0$), $CUG(t) - 10\% \times \text{Max}[AL(t), FV(t)] (\equiv EG(t))$ 는 10%범위초과이익(결과적으로 $AC1(t+1) < 0$)을 의미한다. 이를 간략히 도해하면 아래와 같다¹⁹⁾.

〈그림 1〉 10%범위 접근법 도해



여기에서 '10%범위'는 CUG (혹은 CUL)의 상각을 유예할 수 있는 최대한계치로서, 그 초과분은 근로자의 평균잔여근무기간에 걸쳐 이연상각(spreading $CUG(t)$ over $n(t)$)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IASB는 10%이내의 손익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상호 상쇄될 것이라고 관점에서 당기 연금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을 유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위와 같은 10%범위접근법의 계리적 평가는 무엇인가? 우선 회계학적 관

19) 연금회계(2001), p111의 도표를 참조하여 재구성한 것임.

점에서 살펴보면 계속기업기준에 부합하지만 발생된 손익을 10%범위내에서 상각을 유예한다는 사실은 발생주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금계리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PUM이 연금제도의 비연속성을 전제로 CSC를 산정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상각분 AC1 또한 비연속성을 전제로 산정되어야 주적립 및 보조적립 방법간의 일관성이 유지되며 상호 비교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다. 아울러, *CUL*의 상각유예 및 *EL*의 이연상각은 기업의 적립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EG*의 이연상각은 기업에게 과도한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표 2>에서 설명한 정보이용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IASB의 손익상각 규정은 기업의 이해관계를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한 규정으로 정보이용자간의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조정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제반 문제점을 조율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EG*(혹은 *EL*)는 즉시 상각하고, 10%이내의 손익은 위와 같이 이연상각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IASB의 조기상각 규정을 활용한 것으로, 기업의 파산 등으로 인한 연금수급권 침해가능성 및 연기금이 조세은닉처로 악용될 가능성 등을 사전에 배제 혹은 약화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계속기업 및 발생주의 회계원칙 모두를 조화롭게 충족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IAS 19호 제96절에서는 계리적 과거근무원가의 상각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직전회계연도말(t)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되어야 할 계리적 과거근무원가 상각분($AC2(t+1)$)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즉,

- (i) 연금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은 가입현직자들의 경우(case of non-vested pension benefits):

$$AC2(t+1) = \sum_{j=0}^{\infty} \left\{ \sum_{m(t-j) \geq j+1} \frac{PSB(t-j)}{m(t-j)} \right\}$$

여기에서,

$PSB(t-j) = t-j$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과거근무원가 (> 0 , 즉 연금급부의 축소는 제외됨);

$m(t-j) = t-j$ 회계연도에서 연금수급권이 발생하기까지 소요되는 평균기간.

위 식은 $PSB(t-j)$ 를 상각기간 $m(t-j)$ 에 걸쳐 완전상각하고, 상각기간 중 매년 정액(즉, $\frac{PSB(t-j)}{m(t-j)}$)을 당기 연금비용으로 인식하는 정액상각법을 취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추가적으로 실무적 차원에서 수급평균기간을 정수 연수로 산정하는 세부적 지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m(t-j) = 3.1$ 년이라면 4년에 걸쳐 상각하는 비효율성이 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무적 차원에서 분자 $m(t-j)$ 을 가장 큰 정수(the largest integer notation $[.]$)를 선택하는 $[m(t-j)]$ 로 대체함으로써 IASB의 조기상각 허용 규정을 활용할 수도 있다.

(ii) 연금수급권이 이미 발생한 가입(현직, 퇴직)자들의 경우(case of vested pension benefits):

$$AC2(t+1) = PSB(t).$$

즉, 당기회계연도 직전에 발생한 $PSB(t)$ 를 당기 연금비용으로 즉시, 전액 인식하는 즉시상각법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거근무원가 인식방법에 대한 IASB의 규정은 주적립방법의 도입전제(즉, 연금제도의 비연속성 전제)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부연하면 연금수급권 확보 차원에서 (i)의 경우 즉시상각법을 취하여 가입자의 채권을 확보하는 측면과 (ii)의 경우 기업의 적립부담을 완화하는 정액상각법을 설정하고 있어 정보이용자간의 이해갈등 요소를 조율하는 규정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단지, 정액상각법은 회계학적 편의에 기인한 방법이란 점에서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연금상각법으로 대체함이 계리적 타당성에 한층 더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3. 자산·부채 평가방법 검토

연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주로 언급되는 두 가지 방법은 할인현금흐름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과 시가법(market value method)이다. 이들을 평가할 때 연금계리학적 쟁점은 아래의 항목들을 얼마나 종합적으로 잘 유지하고 있는가에 있다²⁰⁾.

- ㉠ 평가의 객관성(objectivity)
- ㉡ 평가가액의 현실성(realism)
- ㉢ 평가시점별 평가가액 시계열의 평활성(smoothness)
- ㉣ 자산 및 부채 평가방법 적용의 일관성(consistency)

여기에서 객관성이란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평가 주체별 주관성·편향성 여부를 검토하는 항목으로서 시가법이 가장 불편성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현실성은 평가상의 인위성·가공성을 배제하는 평가항목으로 객관성과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다. 즉, 부채평가시 연기금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 할인현금흐름법은 어느 정도의 객관성은 유지되지만, 그 가정에 의한 평가가액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평활성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단기적 변동성을 어느 정도 배제하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시가법보다 할인현금흐름법이 일반적으로 우수하다. 마지막으로 일관성은 평가방법상의 비교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자산과 부채 모두 미래의 현금흐름을 전제한다든지 혹은 모두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든지 등은 일관성이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IASB의 연기금 자산 및 부채 평가방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미 연기금의 부채 평가는 주적립방법인 PUM에 의해 산출되는 PBO의 계리현가(AL)라는 IASB의 규정을 설명하였다. 즉 우량사채 할인율을 이용한 할인현금

20) 언급된 4개 평가항목은 Dyson & Exley(1995), Exley et al(1997), Pemberton(1998) 등의 논문에서 언급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집약한 것임.

흐름법을 적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IAS 19호 제102-104호에서 연기금 자산은 공정가액(fair value of plan assets or FV)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 (i) 시장성이 있는 경우: 시가(market price)를 공정가액으로 설정한다.
- (ii) 시장성이 없는 경우: 추정 공정가액(예, 자산만기, 매각시기, 자산운용위험 등을 고려한 할인율(risk-adjusted discount rate)을 적용하여 자산에서 창출될 현금흐름의 현가(discounting expected future cash flows of assets)를 공정가액으로 추정함).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IASB 연기금 자산·부채 평가방법 비교

구 분	AL	FV	
	계리현가	시 가	추정현가
객관성	○	◎	◇
현실성	◇	◎	○
평활성	◎	◇	○
일관성	AL vs. FV(시가)	AL vs. FV(추정현가)	AL vs. FV(시가 & 추정현가)
	◇	◎	○

주) 평가항목별 상대적 3-점 평가(◎ ≡ 우수, ○ ≡ 보통, ◇ ≡ 미흡).

여기에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전반적으로 시가로 평가함이 일정 가정에 의한 계리현가 혹은 추정현가 보다 우수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다는 것은 신뢰성 있는 연기금 시장이 존재하여야 하고, 미래의 연금 지급 약속분에 대한 공정가액을 산출함에 객관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실무적 어려움이 있기에 전세계적으로 계리현가로 평가함에 이의가 없다. 따라서 연금계리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은 결국 일관성 문제로 귀결된다. 왜냐하면 연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안정적으로 운

영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자산·부채 종합관리시스템(ALM) 운영관점에서 보면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 구조적·체계적 자산·부채 비대칭에 기인한 계리적 위험(actuarial risk)이 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가법 적용원칙을 표명하고 있는 IASB는 일관성 및 평활성 부족을 앞에서 설명한 계리적 손·익으로 조정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가평가는 금융시장의 안정 및 투자위험에 대한 금융해정상품의 다양성 등을 전제로 시행되어야,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²¹⁾. 그러므로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국가는 시가와 추정현가를 혼합한 평가방법에 치중하는 회계기준의 제정이 필요하다.

Ⅳ. 결론 및 제언

우리 나라에서 기업연금 도입가능성에 대비한 준비는 80년대 중반부터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IMF 구제금융사태를 거치면서 오랜 관행으로 정착되어온 퇴직급여충당금의 문제점이 노사정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었고, 아울러 기업의 재무건전성 구축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 사회적 구조 조정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요구의 와중에서 근로기준법 개정(1997. 12. 31)을 통하여 퇴직보험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하나의 결실을 보았다. 이러한 자그마한 출발점을 기점으로 최근 한국회계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및 한국노동연구원 등 정부산하기관을 중심으로 3층노후보장체계(three pillar system)에 입각한 실제적 기업연금제도의 확대를 위한 제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IASB가 국제적 정합성을 강조하는 IAS 19호를 발표하면서 기업연금회계기준에 대한 국내 회계학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반면, 연금계리학 분야는 이렇다 할 검토의견 조차 없는 실정이다.

21) 이러한 금융시장의 환경 측면 이외에도, 자산·부채 비대칭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실제로 미국, 캐나다 및 영국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확률론적 자산·부채 모델링 접근법(stochastic asset-liability modelling approach)의 적용 여부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개발 능력 여부 등 연금전문가집단의 전문성 또한 요구된다.

본 논문은 IAS 19호 규정 내용 중에서 연금계리적 분석대상이 되는 핵심 이슈 3가지(즉, 계산기초규정, 적립방법규정 및 연기금 부채·자산 평가규정)를 도출하고 각각에 대해 평가하였다. 아울러 본론의 분석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IASB의 기본 규정들이 연금수급권 확보에 치중함으로써 운영의 주체인 기업보다는 가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음을 잘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계리적 손·익 및 과거근무원가의 조기상각 허용, 준비금부리이율의 시장수익률 반영, PUM 방식만을 허용하는 점, 자산의 시가평가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별 연금회계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국제회계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표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사정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고려되고 상호 상당부분 합의되어야 할 실무적 제약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약조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계리인과 회계사간의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²²⁾. 물론 IASB 또한 역사적으로 회계학이 역사적 원가주의(historical cost principle)에 근거한 과거지향적 실용학문으로 발전되어 왔고, 계리학은 재무적·인구통계학적 확률변수를 예측·통제하는 미래지향적 실용학문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학문적 차별성 및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상호 보완 필요성을 계산기초 선정 규정, 적립방법에 의한 연금부채 및 연금비용 산정 규정, 계리적 손·익 상각 규정 등을 통하여 상당부분 IAS 19호에 반영하고 있다. 부언하면, 연금회계는 회계학의 한 특수 분야로서, 일반회계와는 달리 미래의 불확실성을 예측하는 추정치가 필요하며 그리고 추정치와 실제치와의 정기적 조정 등을 통하여서 신뢰성있는 회계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기업연금회계기준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 회계전문가 뿐만 아니라 계리전문가들의 적극적 참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노사정 모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객관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 있다고 믿는 바이다.

22) 실제로 국제계리인회(International Actuarial Association or IAA, 1895년 설립)는 오랜 역사 과정속에서 국제회계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or IFAC, 1977 설립) 및 IASB와의 상호 발전을 도모해 왔다.

V. 향후 연구 과제

본 논문은 국제기업연금회계기준상에 나타난 연금계리적 이슈를 도출하고 그 내용을 연금계리적 관점에서 서술적으로 평가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검토 과정은 향후 연구과제(future work)로 남겨 두고자 하는 연금 자산 및 부채 모형(pension fund asset and liability model) 구축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리라 기대하는 바이다. 기업연금제도가 실제로 도입되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향후 연구될 국제기업연금회계기준의 계량적 평가는 확률론적 모델링 접근법(stochastic modelling approach)과 시뮬레이션 접근법(simulation approach)을 병행함으로써 보다 객관적 분석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문헌

- 김해식, 『국제보험회계기준 연구』,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1. 12.
- 성주호, 「퇴직금제도와 수급권보장보험의 연계」, 『보험학회지 제56집』, 2000. 8.
- _____ · 김진익, 「퇴직연금 계리 및 재정」,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8. 6.
- 류건식, 「우리나라 기업연금 회계제도의 도입과제」, 『보험학회지 제53집』, 1999. 3.
- 전춘욱 · 이효익 · 이석영, 「연금회계도입을 위한 퇴직급여회계의 국제비교연구」, 『회계와 감사 연구 제34호』, 한국공인회계사회, 1998. 12.
- _____ · _____, 『연금회계』, 한국회계연구원, 2001. 2.
- Bader, L.N., "Actuarial Implications of Dedicated Pension Funds," *Transactions of the Society of Actuaries*, Vol. 35, 1983, pp.563~584.
- Cairns, A.J.G., "Some Notes on the Dynamics and Optimal Control of Stochastic Pension Fund Models in Continuous Time," *ASTIN Bulletin*, Vol. 30, No. 1, 2000, pp.19~55.
- Dyson, A.C.L. & Exley, C.J., "Pension Fund Asset Valuation and Investment," *British Actuarial Journal*, Vol. 1, 1995, pp.471~557.
- Exley, C.J. et al., "The Financial Theory of Defined Benefit Pension Schemes," *British Actuarial Journal*, Vol. 3, 1997, pp.835~966.

- Haberman, S., "Pension Funding: the effect of changing the frequency of valuations," *Insurance : Mathematics and Economics*, Vol. 13, 1993, pp.263~270.
- Haberman, S. & Smith, D., "Stochastic Investment Modelling and Pension Funding: a Simulation Based Analysis," *Actuarial Research Paper* No. 102, London: The City University, 1998.
- Haberman, S. & Sung, J.-H., "Dynamic Approaches to Pension Funding," *Insurance: Mathematics and Economics*, Vol. 15, 1997, pp.151~162.
- IASC, IAS 19(revised 2000): Employee Benefits, 2000.
- Lee, E.M., *An Introduction to Pension Schemes*, London : The Chameleon Press, 1986.
- McGill, D.M. et al., *Fundamentals of Private Pensions*, 7th ed.,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6.
- Marshall, D.R. & Reeve, J.G., *Defined Benefit Pension Schemes Funding for Ongoing Security*, paper presented at the Staple Inn Actuarial Society Meeting, 1993, London.
- Pemberton, J., *The Value of Actuarial Values*, Paper presented at the Staple Inn Actuarial Society Meeting, 1998, London.
- Thornton, P.N. & Wilson, A.F., "A Realistic Approach to Pension Funding," *Journal of the Institute of Actuaries*, Vol. 119, 1992, pp.229~312.

Abstract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rive actuarial challenging issues and to provide some actuarial notes on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on post-employment pension benefits issued by IASB(i.e. IAS 19). In particular, we examines 3 material regulations using actuarial approach - regulation for actuarial assumptions, regulation for pension funding method(including amortization method) and regulation for asset and liability valuation method. Actually, these parts have been systematically developed in the field of actuarial science since the International Actuarial Association was founded in 1895. In this respect, we point out that when setting up and then implementing Korea pension accounting standards, the actuarial comments and viewpoints should be properly taken in account. Through this paper, we are devoted to providing insight into actuarial approach, ultimately to how to harmonize the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employees, employers and government bodies involved in supervising company pension plans, when establishing our accounting standards in harmony with IAS 19.

Lastly, I hope that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bridging the gap between pension fund accounting issues and actuarial issues and furthermore be a starting point of doing reciprocal co-work between accountancy professions and actuarial professions.

※ Key Word : IAS 19, pension valuation, pension funding, solvency risk